

#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

□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!

선배·동료 위원님 여러분! 김 용 석 의원입니다.

「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.

□ 본 개정안의 제안 이유는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감사결과를 분기별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, 감사위원회가 서울시 산하기관의 자체감사 지원 및 결과를 통보받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 보장과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.

□ 주요 내용은 안 제19조를 신설하여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위원장이 감사결과를 분기별로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, 안 제20조를 신설하여 공사·공단·투자·출연기관의 자체감사활동 지원 및 심사와 자체감사 결과를 통보받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□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!

○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징계규정과 징계시효 등에 대해 자의적인 적용을 예방하고, 감사역량의 미비점 보완 및 내부통제의 미약함 해결 등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서울시의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